

日本 公正去來委員會・研究會報告

— 獨占禁止法 適用除外制度의 改善에 대하여 —

日本 公正去來委員會의 「정부규제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는 7월 29일 「獨占禁止法 適用除外 制度의改善」에 관한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I 총론」과 개별적용제외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II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각론」의 「적용제외카르텔제도」가운데 「손해보험업 관계」라는 항목을 두어 「保險業法, 損害保險料率 算出團體에 관한 法律등」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적용제외제도의 개요, (2) 적용제외제도의 취지와 목적, (3) 적용제외제도의 내용, (4) 적용제외제도의 운용상황, (5) 적용제외제도에 대한 의견(① 보험요율 카르텔, ② 공동보험·재보험, ③ 보험약관협정, ④ 재보험료, ⑤ 수속규정)등을 들고 있다.

同研究會는 1988년 7월 이후, 物流관련분야, 소비자에 대한 재산·서비스 공급분야 및 농업관련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규제제도의 개선과 競爭確保·促進政策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1989년 2월과 10월에 검토결과를 정리했다. 이 가운데 獨占禁止法 適用除外制度에 대하여는 유통업이나 여객운송사업등 일부의 분야에서 그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최근의 적용제외제도에 대한 체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1990년 1월 이후, 적용제외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개선을 검토해 왔다. 동연구회의 편성은 동연구회내에서 「獨占禁止法 適用除外制度 小委員會」를 설치하여 검토를 추진하고, 그 보고

에 입각하여 동연구회의 의견을 今會의 보고서로서 마무리한 것이다.

「총론」에서는 일본의 獨占禁止法 適用除外制度의 현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시장 메카니즘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그 문제점, 제도나 운용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개개의 제도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제도창설의 근거, 대상업종이 처한 환경, 제도의 실시상황과 그것이 대상업종, 주변업종, 더 나아가 소비자에 미치고 있는 영향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각론」의 개별제도와 운용에 대한 검토·제언에서 다루고 있다.

適用除外制度는 특정의 분야·조건 아래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독점 금지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제도이며, 獨占禁止法 자체나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용 제외가 되는 행위의 범위, 적용제외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수속등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적용제외 규정을 가진 제도는 1991년 6월 현재, 42법률에 기초한 68제도가 있다.

同研究會에서는 이러한 적용제외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그 문제점, 제도나 운용의 방향에 대해 검토했는데 카르텔에 관한 적용제외제도(이하「적용제외카르텔제도」라 한다)와 재판매가격유지제도등,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適用除外制度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연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무관청이 동보고의 취지에 입각하여 시장 메카니즘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적용제외제도와 그 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정할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고 하고 있다. 이하 손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 損害保險業 －

I. 適用除外制度의 概要

損害保險業에서 적용제외제도는, 보험업법(1939년 법률 제 14호) 제 12조의 3 및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1949년 법률 제 184호) 제19조에 기초한 두 제도와 適用除外法 제1조 및 제2조 제1항〈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93호, 이하「산출단체법」이라 한다.〉 및 어선

손해보상법(1952년 법률 제 28호)에 기초한 두 제도등 총 네개의 제도가 있고, 이 각법률에 기초하여 보험요율 카르텔, 공동보험·공동재보험, 보험약관협정, 재보험폴 등의 共同行爲가 행하여지고 있다(또한 보험업법에 기초한 적용제외제도와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適用除外制度와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후자의 제 19조에 의해 전자의 적용제외규정이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하는 「보험업법등에 기초하는 제도」로서 기술하기로 한다).

II. 適用除外制度의 趣旨와 目的

損害保險業에 있어서 각종의 공동행위에 대해 적용제외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주된 이유로서 주장되어 온 사정은 이하와 같다.

1. 保險料率

保險事業의 성격상,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과의 균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지만 保險契約의 原價는 계약체결시점에 있어서는 불분명하고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保險會社가 인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손해발생의 위험에 대한 전망하에서 지나치게 낮은 요율을 설정할 요인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산내용이 악화되고 사고발생시에 保險金 支給不能 事態가 발생하며 특히 대중물건에 있어서 保險料率의 폭등이나 인수 거부라는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保險料率의 算定費用이 고액화되기 때문에 원활한 공동보험을 행하기 위해서도 料率의 共同決定이 필요하다.

2. 共同保險・再保險

보험사업에 있어서 위험평준화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결하다.

3. 保險約款協定

손해통계의 공동작성을 위한 계약조건의 통일, 원활한 공동보험, 소비자이해의 혼란방지등을 위해 필요하다.

4. 再保險풀

- 1) 사업의 國際性으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보험 소화액을 확보하고 해외재보험시장에 있어서 신용력·교섭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항공보험, 해상보험등).
- 2) 해당보험사업이 사회정책적 배려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고 상업적 기초하에서는 반드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를 전제로 재보험풀에 의한 원활한 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자배책보험, 가계지진보험, 원자력보험등).

III. 適用除外制度의 內容

1. 行爲의 內容

- 1) 적용제외제도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공동행위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

① 保險業法등(제 12조의 3)

A. 해상보험, 항공보험, 자배책보험 및 가계지진보험 :

다른 사업자와의 협정, 계약, 기타 공동

행위(제 1항 제 1호)

B. 기타의 保險事業(제 1항 제 2호) :

- a. 보험 또는 재보험의 거래에 관한 수량의 결정 또는 제한 (공동보험·재보험)
- b. 보험요율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한 협정
- c. 재보험에 관한 상대방 또는 수량의 결정 또는 제한에 관한 협정, 계약 또는 기타 공동행위(재보험풀)

② 算出團體法 : 요율산정회에 있어서 보험요율의 결정(보험요율 카르텔)(제 2조 제 2항)

③ 漁船損害等 補償法 : 어선보험조합이 행하는 어선보험사업에 관해서 어선보험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행하는 보험요율의 산출 (제 133조)

2) A에서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共同行爲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B에서 들고 있는 것과의 실질적인 차이는 A에 해당하는 保險事業에 대해서는 B에 기재한 공동행위에 덧붙여(대리점 수수료협정, 손해사정협정, 보험료 지급기일협정을 포함한다.) 원수보험요율에 관한 料率協定이 행해질 수 있다. 단 B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도 ②에 의해 保險料率協定을 행할 수 있다.

3) 算定會가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원각사가 당해요율에 대해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산출단체법 제 10조의 4), 당해요율을 준수할 의무를 지지만(산출단체법 제 10조의 7)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自賠償, 家計保險을 제외하면 範圍料率이 채택되고 있어(산출단체법 제 2조 제 6항) 각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산정회가 산출한 요율과는

다른 요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許容要件

1) 保險業法등에 기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극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제 12조의 5 제 1항).

또한 소위 단서규정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했을 때, 상호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때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의해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될 경우에는, 獨占禁止法の 適用除外가 되지 않는다(제 12조의 3)

2) 요율산정회 또는 어선조합중앙회가 행하는 料率算定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3. 許容手續

1) 보험업법에 기초하는 보험사업자간의 공동행위중 주무대신의 명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고(제 12조의 6 제 1항), 주무대신이 이 명령을 제정할 때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제 12조의 6 제 2항). 현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의해, ① 共同行爲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것 ② 再保險에 관한 것, ③ 國家, 政府關係機關 또는 地方公共團體에 관한 것은 신고 대상이며 사실상 이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이 사후에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주무대신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공동행위에 대해 취소, 변경을 명할 수 있

는데 (제 12조의 4 제 5항, 제 12조의 5 제 1항), 이 처분은 제 12조의 3에 기초하는 공동행위가 동조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公正去來委員會의 인정을 구속하고 公正거래위원회 獨占禁止法上的 권한행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제 12조의 7).

2) 산출단체법 또는 어선손해등 보상법에 기초한 요율산정활동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특별한 수속규정은 없다. 산정된 요율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IV. 適用除外制度의 運用狀況

1. 保險料率 카르텔

1) 보험업법 제 12조의 3에 기초하는 것

보험업법 제 12조의 3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海上, 航空, 家計地震 및 自賠償 各 保險에 대하여 보험요율 카르텔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동호의 규정에 기초하여 보험요율 카르텔을 행하고 있는 것은 海上保險 및 航空保險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日本船舶保險聯盟에서 보험요율을 공동산정하여 작성하는 요율표에 의하거나 요율표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시에 요율을 공동산정하는 것으로 카르텔을 실시하고 있다. 항공보험에 있어서는 각보험사업자가 보험인수시 재보험pole에 안전을 보고하고 동pole의 해외재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교섭에 입각하여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2) 算出團體法에 기초하는 것

보험업법 제 12조 3의 규정에서 保險料率에 관한 카르텔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사업에 대해서도 산출단체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算定會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의 규정에 기초하는 保險料率에 관하여 카르텔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家計地震保險 및 自賠償保險에 대해서도 산출단체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산정회의 보험요율카르텔을 행하고 있다.

현재, 算出團體法에 기초하여 설립된 산정회는 損害保險料率算定會 (1948년 설립) 및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1964년 설립)등 두 단체이며 각각 이하의 보험종목을 대상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A. 손해보험요율산정회...화재보험(가계지진보험을 포함) 및 상해보험의 일부(수입보험료 기초로 거의 대부분을 커버)

B.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어떠한 보험종목이 산정회의 料率決定에 적당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약자 수가 많고 危險의分散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料率水準의 檢證이 용이하여 요율산정에 대해 판단요소가 적은 보험종목이 적당하고 매년 검증이 행해지며 또한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광고등이 확보되어 있는 등 투명성이 높아 사회의 보편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종목이 적합하다. 위험의 양태가 여러방면에 걸쳐있고, 불안정한 보험종목에 대해서는 요율카르텔을 행할 경우였어도 보다 특별한 형태를 따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保險業法 및 算出團體法에 기초한 요율카르텔은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純保險料率과 사비, 대리

점 수수료, 이윤에 충당되는 附加保險料率을 합한 營業保險料率에 대해서 행할 수 있다.

3) 어선손해보상법에 기초한 것

漁船損害補償法에 기초하여 어선보험조합을 운영모체로 하는 相互保險이 행해지고 있는 어선보험의 原受料率의 산정은 중앙회가 행하고 있고 일본어선의 상당부분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100톤 미만의 소형어선중, 대부분의 어선이 이에 가입하고 있다. 단, 중앙회가 산정하는 요율은 산하조합의 料率算定을 구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어선손해등 보상법 제 133조). 또한 중앙회가 산정하는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에 한정하여 운용하게 되어 있다.

2. 共同保險・再保險

공동보험·재보험은 보험금액이 커서 한사업자 단독으로는 인수가 곤란한 경우나 보험회사간에 위험을 평균화하도록 할 경우, 혹은 계약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개별안전마다 複数の 保險會社가 그 때마다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공동보험은 예를 들어 1회의 해상운송과 같이 개개의 계약마다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이내이며 주무대신에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그 건수는 불분명하다.

3. 保險約款協定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의 기초서류의 일부로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게되어 있어(보험업법 제 10조 제 1항), 대장성이 개개의 약관내용의 適正性에 대해 감독을 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은 균일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자가 보험의 신상품을

판매한 직후에 다른 사업자가 이것에 따라 동일한 상품을 발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認可申請하는 約款의 내용에 대한 협의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해상보험, 항공보험등과 같이 주로 영국보험협회나 미국 ISO (Insurance Services Office)가 정한 약관에 준거한 통일약관을 이용한 경우, 이 기관에 의한 약관의 변경등에 대응할 경우등이다.

4. 再保險

a. 현재, 항공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지진보험, 유탁배상보험등에 대해서 모두 16개의 재보험폴이 조직되어 국내의 보험사업자는 거의 전부다 참가하고 있다. 또한 폴에의 가입·탈퇴는 자유이다.

b. 대부분의 재보험 폴은 회원각사가 인수한 폴대상보험계약의 전안건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폴로 제공하여 제공된 保險契約는 예전에 정해진 引受比率에 따라 각 회원사에게 배분·보유되도록 조직되어 있다.

배분된 보험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는 관점에서 회원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출재하는 것은 受再社가 폴 멤버의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다. 또한 폴에의 提供再保險 및 配分再保險의 條件, 再保險料率, 再保險手數料率, 풀된 보험약관의 손익계산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항공보험에 있어서는 原受料率이 결정되어 있고 기타 해외출재비율이 높은 보험종목의 원수요율에 대해서는 해외출재보험요율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어서 재보험폴을 통해 해외재보험요율의 정보를 얻는 일이 많다.

V. 適用除外制度에 대한 見解

1. 保險料率 카르텔

보험요율카르텔은 保險事業의 特殊性 때문에 보험요율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인정한 경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 低水準의 料率이 설정되어 보험회사의 자산내용이 악화되고 保險社告發生時에 보험금 지급불능의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예측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자산내용악화의 과정에서 적정요율에 대한 검증수단 혹은 요율결정에 대한 교섭력을 가지지 않은 대중을 위한 상품에 사업전체의 損失이 전가된 결과, 대중물건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고수준의 요율이 설정되어, 예를 들어 사고를 많이 일으킬 것 같은 사람에게는 자동차보험을 팔지 않는 것과 같은 인수거부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 예증으로 최근 미국의 損害賠償責任保險의 保險危機 또는 自動車保險의 인수거부나 요율상승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純保險料率에 대해서는, 손해데이터에 기초하여 保險數理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요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附加保險料率에 대해서는 각보험사업자의 경영효율이 직접 반영되고 실제로 보험회사간의 사업비율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1988년도에 있어서 전보험사업평균 사업이율은 최저32.1%, 최고 55.4%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을 카르텔에 의해 공동결정하는대는 競爭政策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가보험요율을 포함한 영업보험요율에 대해 카르텔을

행하지 않으면 경쟁의 결과, 시장에서 성립되는 영업보험요율의 수준은 경비를 조달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에 충당해야 하는 자금을 경비에 流用함으로써 시장에서 형성되는 낮은 요율에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전회원사의 사업비용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附加保險料率을 적산하고 있는 현행의 산정회요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경쟁정책의 관점에서는 본래, 자금을 확실하게 사내에 유보하거나 보험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保險金 支給不能의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에 상당하는 제도를 정비하여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요율카르텔에 대해서는 競爭政策의 관점에서 전술한 보험요율 상승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에 입각하여 계약자보호의 관점으로부터의 적절한 대응책을 정비하면서(예를 들어 그 범위를 순보험요율에 한정하는 등) 각사의 영업요율의 차를 보험요율의 차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사회정책적으로 保險契約者間の 평등한 취급이나 피해자 구제가 특히 강하게 요청되어 가입이 강제화되거나 보험서비스의 공급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2 共同保險・再保險

공동보험·재보험은 동일한 보험대상에 관한 보험계약에 복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자(또는 재보험자)로서 참가하는 共同行爲이며, 그것이 개별적으로 계약할 때마다 共同保險者의 引受比率등을 정하는 것인한 경쟁제한적이지 않고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獨占禁止法 適用除外規定은 각각 불필요하며 독점금지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관점에서도 공동보험·재보험에 연관된 적용제외규정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정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保險約款協定

(註) 미국의 보험위기: 미국은 1970년대에 事前認可制에서 事後申告制로 이행하면서, 보험요율 규제가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물건은 고금리와 활발한 신규참여를 배경으로 요율경쟁이 격화되고 보험사업자의 사업실적도 악화되어 도산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에 도산하는 사업자, 요율을 급격히 인상하는 사업자가 나타난 결과, 保險契約者가 保險金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요율이 고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고 국민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보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건수·용인액의 증대에 따른 保險金 支給額의 急増, 주단위의 보험사업규제가 보험회사의 주먹구구식의 경영관리에 대해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던 것도 유력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料率規制, 특히 요율카르텔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의 확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한편, 가계물건은 料率自由化 以後,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의 악화에 호응하여 요율의 인상이 연달아 일어나고 뉴욕주에서는 料率引下를 도모하기 위해 재차 사전인가제도로 복귀시키는 등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러나 사태는 호전되지 않고 保險料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인수거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후, 1988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운동에 의한 作民立法(제안 103)이 성립되어 강제로 요율을 2할 인하시키고 요율은 사전인가제로 하기로 하는 극적인 전개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측은 당 캘리포니아주 외에 재산이 많지 않는 주로부터 탈퇴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그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했다.

보험업법 제 12조의 3 제 1항 제 1호에 기재된 보험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국제성, 계약자에게 평등한 취급을 인정하는 사회정책적 요청을 감안하여 보면 保險約款協定을 행하기 위해 適用除外規定을 두는 것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동항 제 2호에 기재된 보험사업에 있어서는 獨占禁止法에 위반되는 듯한 공동행위계약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獨占禁止法 適用除外規定은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이 보험사업의 대중물건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약관 인가시에 적절히 감독하고, 비구속적인 모델약관의 활용에 의해 약관의 내용의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상품의 광고, 설명방법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응은 獨占禁止法の 適用除外規定이 없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 12조의 3 제 1항 제 2 호에 기재된 보험사업에 있어서 보험약관협정에 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규정은 애초부터 불필요하고 독점금지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점에서도 보험약관협정에 관계된 적용제외규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정리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再保險

1) 재보험폴의 활동내용, 설립목적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사는 인수한 保險契約의 全件을 폴로 출재할 의무를 지며, 재보험의 각회원사와의 配分比率도 폴규약 등에 의해 협정되고 있다. 이 결과, 당해보험종목의 再保險引受分野에 있어서는 보험사업자간의 경쟁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2) 게다가 航空保險, 船舶戰爭保險과 같이 원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 전체를 전액폴로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또한(海外再保險料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원수계약의 조건이 결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원수계약의 條件・料率에 재보험폴이 관여할 경우에는 원수보험인수업무에 있어서도 保險事業者間的 競争이 기능하지 않고 당해보험종목에 있어서는 폴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보험사업자로서 활동하게 되어 원수・재보험의 양 분야에 있어서 폴에 의한 事績獨占이 成立하게 된다.

3) 그러나 보험종목에 따라서는 건당 계약금액(=보험금액)이 거대하고 현재 일본에 있어서 保險事業者의 事業規模를 전제로 하면 업계전체에서 인수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海外再保險市場에 있어서 유효한 경쟁단위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책임의 국내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한편 심한 국제경쟁하에서는 국내사업자의 공동행위에 의해 수요자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는 적기 때문에 재보험폴의 결성・활용을 필요로 하는 국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재보험폴을 조직하는 것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의 보험사업자가 보유능력의 증강, 해외의 大規模 再保險事業者와의 提携등에 의해 재보험루트를 확보하여 巨大危險의 인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보험폴로부터 탈퇴한 뒤에도 유효한 경쟁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험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보험폴에 있어서 가입・탈퇴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 경우에는 競争阻害性이 커서, 이것에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현행의 폴 규약등에 있어서 가입・

탈퇴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없다).

또한 보험업법등에 의해 보험요율카르텔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保險種目에 대해서 재보험폴기구를 중개하여 보험요율카르텔을 행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을 적용제외시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5. 手續規定

현행의 수속규정에는 공동행위의 체결에 대해서 公正去來委員會가 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무관청과 보험사업자와의 관계에서도 공동행위에 관한 수속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은 개별계약에 있어서 공동보험·재보험과 보험요율의 공동결정이 개개의 계약을 할 때마다 행해질 경우에는 인가·신고등의 수속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요율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요율체계에 대한 공동결정이 산정회 이외의 곳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當該保險料率이 自由料率이었어도 이

것이 카르텔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서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무대신이 충분한 감시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주무대신에의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보험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면이 있는 한편 競爭狀態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무대신에게 신고가 될 경우에는 엄중한 체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보험폴에 있어서는 業界内外의 變化에 따라 부단한 개정이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보험폴의 운용실태가 保險業法 제 12조의 3 제 1항단서의 「상호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때」에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감시를 행할 필요가 있다.

(日本 保險研究所 發行 週刊「Insurance」1991年 8月8日字)